

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400호(2015. 12. 17.)로 재정비촉진구역지정 고시 이후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 26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09호(2020. 12. 3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-210호(2020. 12. 3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-38호(2021. 3. 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-123호(2023. 7. 28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의 수립기준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명 칭: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

나. 면 적: 7,049.2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(주)디에이치프라퍼티원(대표 이택서)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, 3층(상일동, 강동타워)

※ 사업대행자: (주)코람코자산신탁(2021. 2. 10.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1. 2. 25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분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지하/지상)	용 도
기정	6,446.3	3,231.5116	50.13	74,549.8675	649.83	7/42	공동주택(408세대), 공공청사, 근린생활시설
변경	6,411.5	3,096.1748	48.29	74,165.2665	649.93	7/42	공동주택(407세대), 공공청사, 근린생활시설

나. 건축시설 공급계획

구 분		대지면적(㎡)		동수	층 수	세대수(세대)		연면적(㎡)	
		기정	변경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
공동주택	소계	5,139.9	5,126.0	2	지하7층~지상42층	408	407	59,441.8078	59,295.5900
	분양	4,458.1	4,445.3	2	지하7층~지상42층	328	327	51,613.0145	51,457.8667
	임대	681.7	680.6			80	80	7,828.7933	7,837.7233
근린생활시설		812.7	775.0		지하3층~지상2층	-	-	9,466.9471	9,204.4296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명세

구 분		용도폐지	신 설			
종 류		-	계	도 로	기 타	
					공공시설(공공청사)	지하공공보도시설
규모 (㎡)	기정	-		649.7	5,641.1126(연면적)/493.6(대지지분)	24.8(구역 외)
	변경			637.7	5665.2469(연면적)/510.3(대지지분)	25.3(구역 외)

라.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: 해당없음

마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주택규모별[전용면적(㎡)기준] 공급세대수						토지등 소유자	보류시설
	기정			변경				
	주택규모별	일반분양	임대	주택규모별	일반분양	임대		
계		328	80		327	80	-	-
	36.1924	7	30	36.9919	12	25	-	-
	44.8459	4	29	44.8835	4	34	-	-
	44.9707	9	21	44.9889	4	21	-	-
	59.7531	68		59.9759	68		-	-
	59.7548	56		59.8256	56		-	-
	59.8788	38		59.9800	38		-	-
	59.8891	27		59.8964	27		-	-
	74.3839	1		84.9869	46		-	-
	80.4500	1						
	83.1913	7		84.9994	60		-	-
	84.6934	46		104.4333	7		-	-
	84.6945	26						
	84.9609	34		108.8719	2		-	-
	89.6105	1		113.3591	2		-	-
	96.7615	1						
	108.2405	1		180.9176	1		-	-
	117.3091	1						
근린생활시설	9,466.9471			9,204.4296				

바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: 철거완료

6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425-6053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-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 -
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· 공고

강동구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8일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공람 기간: 2023. 10. 18. ~ 2023. 11. 2.

2. 공람 장소

- 서울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강동구 성내로 25, 본관 5층)
- 성내동 120-85,86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성내동 120-85, B303호)

3. 공람 내용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(개인정보 제외)

4.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

가. 사업 명칭: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위 치: 강동구 성내동 120-85,86번지

다. 구역 면적: 2,684㎡

라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

마. 토지 등 소유자: 36명

바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1) 조합명: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2)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-85, B303호

5. 의견제출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
6. 기타사항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☎02-3425-88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

-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-

성명		생년월일	
주민등록상 현 주소	(전화 :)		
소유권 위치 (권리지번)			
의견내용			

강동구청장 귀하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인사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인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8일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응시연령 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

- 1)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규정 신설 등(안 제37조의2)

나.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반영

- 1)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

3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: 2023년 10월 20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 · 우편 · 전자우편 ·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

다. 기재내용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라. 제출기관: 강동구청장(행정지원과)

-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, 행정지원과(성내동, 강동구청)